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79 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김태년·황명선·김남근

이훈기 • 채현일 • 김태선

김한규 · 김현정 · 김영배

염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,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 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)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 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수 감액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7조의2(권한행사가 정지된 공
	무원의 보수) 탄핵소추의 의결
	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
	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
	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
	<u> 감한다.</u>